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5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송옥주 · 황명선 · 이원택
임미애 · 이병진 · 한민수
전용기 · 한정애 · 이수진
박해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과정이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화와 전문화를 기반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국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신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통합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이하 “통합조직”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조직과 통합조직의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통합조직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조직의 지정·지정 취소의 요건·절차, 업무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조직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합조직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통합조직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통합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이하 “통합조직”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조직과 통합조직의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
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통합조직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
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통합조직의 지정·
지정 취소의 요건·절차, 업무
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조직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u>
--	--